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2026. 07.



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별권 1로 수록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을 중심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내 관련 절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매뉴얼 본문 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타 본 매뉴얼 내 용어에 대해 아래 표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매뉴얼 내 약어 〉

법·하위령·하위규칙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연구개발기관계정		기관계정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기관 전체계정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		└기관 세부계정
연구책임자계정		책임자계정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 2021년 이후 주요 용어 변경 사항 〉

~ 2020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2021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학생연구원	→	(고시 제2조제14호) 학생연구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고시 제2조제17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고시 제2조제18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기관계정		(고시 제87조제2항)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내부 운영규정		(고시 제88조제1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참여율		(고시 제91조제2항) 지급률
유용		(고시 제92조) 부당회수
집행비율		(고시 제93조제5항) 지급비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참고 사항 〉

- 1) 연 1회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9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점검 자료 제출, 현장점검 수검
- 3)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등록 정보 현행화
- 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영상 활용
-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담당자 변경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도혁신센터에 신고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1. 추진 배경	3
2. 목적	3
3. 주요 내용	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9
1.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11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12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13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계	14
5. 통합관리계정 설정	15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16
7. 운영현황 자체점검	1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9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21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23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24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25
5. 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	30
6. 학생인건비 이자 처리	32
7. 학생인건비 이관	33
8. 학생인건비 반납	36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 39

1.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유형 변경 41
2. 운영결과 점검(과기정통부→통합관리기관) 43
3. 지정취소 기준 44
4. 지정취소 시 통합관리기관의 사후조치 46

제5장 FAQ 47**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51****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52****참고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53**

제 1 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유연한 사용을 통해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부터 시행('09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시행, '1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 제도화)
- 학생인건비 풀링제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시행 이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만 연구개발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연구개발기간 외 기간의 학생인건비 수급 안정성이 부족

2. 목적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3.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고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내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관련 조항에 따르며, 기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제반 사항은 학생연구자 및 학생인건비 관련 조항을 따름
-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시 제6장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조문에 따라 관리

〈표 1-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매뉴얼 체계

구분	법령 및 규정, 매뉴얼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행정규칙(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본권 및 별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 신청 자격

-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학생인건비 사용 연구개발기관 중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 주요 특징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의 책임 하에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적립 및 지급함. 학생인건비 연간 지급 잔액은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와 관련하여 매년 점검 실시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연구자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계상물은 등록·관리하지 않으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참여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
 -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를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학생연구자를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각 전문기관의 PMS(과제지원시스템)를 통해 참여연구자 등록
 - 통합관리계정 등록 당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연구자는 수행 과제가 생기는 즉시 해당 과제 전문기관에 참여연구자 등록신청을 하여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발생 여부,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매년 점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고시 제9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내부 위임규정에 따라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정한 기관장의 직무 수행 가능

●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표 1-2〉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통합 관리	연구 개발 기관 계정 (기관 전체 계정/ 기관 세부 계정)	예) 산학협력단 또는 OO학과	연구책임자 A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책임자 B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	↓	↓	↓
			계정대체 또는 이체			
			산학협력단의 기관 전체계정 또는 OO학과의 기관 세부계정			
			↓	↓	↓	
		월별 기관계정 학생인건비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기관계정책임자(예: 산학협력단장 또는 OO학과 학과장)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 후 기관장이 기관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 책임자 계정	예) 연구책임자 A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이체						
연구책임자 A의 책임자계정						
↓			↓	↓		
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책임자계정책임자(예: 연구책임자 A)가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 책정하여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한 후 기관장이 책임자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비통합 관리	연구 개발 과제 계정	예) 연구책임자 A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	↓
			최과학 학생연구자		유기획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 책정하여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 후 연구개발기간 내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불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규 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기관 홈페이지, NTIS에 공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유형 변경 시 NTIS에 정보수정 신청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설 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및 책임자계정) 설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계정만 설정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계 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계상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수 입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확 약	•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한정) 기관계정 지급 대상자 및 학생인건비 지급 금액 책정 • 책임자계정 지급 대상자 및 학생인건비 금액 책정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기관장-계정책임자-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통합관리기관 (전체)
지 급	•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정 산	•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을 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으로 보고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관 리 · 감 독	•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 공동관리, 미지급 등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 방지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 연구참여확약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증명자료 5년간 보존 •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반납)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 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학생인건비계상률·지급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학생인건비계상률·지급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총인건비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신 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학생인건비계상률·지급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 '23년도 변경사항 -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 ↔ 계정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 ↔ 계정책임자 ↔ 통합관리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비통합관리) 월 단위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비통합관리)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신 설〉 - (공통)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기관계정)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시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20% 이상을 지급 노력 (※ '25년도 변경사항)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의무 규정은 폐지 (※ '25년도 변경사항)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기관계정 수입 처리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좌 동〉
	〈신 설〉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전용 계좌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신 설〉	'24년 9월부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 사용 의무 (※ '24년도 변경사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상 잔액과 전용 계좌 잔액 일치 확인 필요 -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책임자계정에 적립 필수
정보공개	〈신 설〉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전 기관 전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과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 시 잔액이관	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	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 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
과제중단 시 잔액사용	〈신 설〉	기관 내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반납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고시 별지 제9호서식(자체점검표)를 사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제 2 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⑧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
 - ※ 학연프로그램,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포함
- 지원규정에는 학생의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통합관리기관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통합관리 수행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의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관리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내 ‘R&D 과제 준비 - 국가 R&D 법령·지침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 도움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보완·개정 안내’ 참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요건

- 학생연구자의 학업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인건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계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및 연구참여확약서 위반에 대한 신고시스템 운영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제97조(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관리에 관하여는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계상기준을 정하여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이를 명시
- 통합관리기관별로 고시 제40조제4항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월 130만 원, 석사과정-월 220만 원, 박사과정-월 300만 원, 통합과정-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기준 금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책정
- 동일 학위과정 학생연구자에게 동일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관 내 학과·연구부서·연구책임자계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
-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을 근거로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4대보험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가능하고 학생연구자의 월별 지급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자의 계상기준 금액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 고시 제97조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의 합이 소속기관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의 100%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기준이 되는 계상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적 기관(소속 대학) 계상기준임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시 제40조제5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특히 고시 제40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학생인건비 감액 금지)
- 학생연구자가 수료 및 졸업 시 학적변동일 기준 월의 말일까지의 해당월 지급액을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내에서 사전에 연구참여확약서를 통해 확약한 금액 지급 가능
- 학위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수료등록생)’은 연구참여 확약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재학에서 수료등록으로 학적변동되었어도 해당월 지급액 일할계산 불필요 (수료 후 연구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상호 연계
3.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정보 관리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고시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참고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참고
- 고시 별표 3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라 항목 관리
-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의 상호 연계
-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현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5. 통합관리계정 설정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부분 참고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부분 모두 참고

① 책임자계정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제8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이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 가.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 나.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연구책임자별로 1개의 책임자계정을 설정

* 동일 연구책임자에 대해 2개 이상의 책임자계정 중복 설정 불가

② 기관계정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 가.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 나.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기관,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계정 설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계정을 설정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기관, 부서 등의 단위로 계정을 설정

- 학과 단위로 설정할 경우, 책임자계정이 한 개 이상 설정되어 있는 대학(원)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별 설정(학과 내 복수의 기관계정을 설정할 수 없음)
- 필요 시 기관 단위의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과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 설정 가능
-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의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필요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책임자계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로 지정함. 다만,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기관 전체 단위로 단일 기관계정을 설정한 경우 기관장이 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가 되며 소관 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현황 점검자료 제출 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관리 사항 예시	- 학생연구자 본인 명의 1계좌 등록 관리 -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수령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제공 -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등 - 연구책임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징구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관련 설문조사 실시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부당지급 사례	- 연구참여확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월별 지급률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참여확약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3항 각호 외 사유로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7. 운영현황 자체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기관장 내부결재 후 기관 내부 지침(기록물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관리
-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결과 점검 시 확인함에 유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사항〉(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O/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O/X)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환경설정	학생인건비 총액 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연구참여확약 대상 관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확인을 위한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시스템 연동	개인정보 제3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현황	학생인건비 수입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이관·반납·이자 금액 관리	
	연구참여확약 절차 관리	적절한 연구참여확약 절차 구현	
	학생연구자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연구자 1인1계좌 등록 관리 및 지급(예정)정보 등 확인 기능 제공,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점검일: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제 3 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책임자계정 설정 부분만 참고하시고,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기관계정 설정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위통합관리시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책임자계정 수입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을 때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을 통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지급·관리에 관하여는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요 내용주요 내용

-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하고,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전용 계좌로 이체 완료하여야 함
- 통합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 사용 가능
-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기존 잔액 포함)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타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 필요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전용 계좌 잔액과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총괄표상 잔액 일치 필요)

-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일자를 입금일자로 관리
- 전산시스템을 통해 책임자계정의 수입·지출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책임자계정에 적립된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서 책임자 계정별 사용잔액 총액이 표시되어야 함(연구개발과제별 잔액 미표시)
- 전년도 지급 잔액은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 계정에 적립하여 지급
- 기관계정의 책임자로부터 기관계정 지급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요청받을 경우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계정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산 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보고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음. 단,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제출 필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의 목록과 사유를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중 고시 제97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② 기관계정 수입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을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책임자계정·과제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받은 학생인건비는 기관계정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 하에 관리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의 이체 또는 계정대체는 불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지출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책임자계정·과제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기관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책임자계정의 수입액 또는 과제계정의 예산에서 차감

-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책임자계정 또는 과제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대하여 세부 현황(수입처리한 학생인건비의 책임자계정 또는 과제계정 정보, 이체 또는 계정대체일자, 금액 등) 관리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산정 시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책임자계정에서 해당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간주 (직전년도가 2024년인 경우까지 유효)
- * 전제기간 중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이 아닌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한함에 유의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⑧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등록·변경 시 학적·인사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및 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
 - * 연구참여확약 시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기관장이 확약하므로 과제 준비에 대한 별도 증빙 불필요하며, 체결된 연구참여확약서를 과제 준비 연구수행의 증빙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표준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text{해당 월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 \\ \div \text{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확약(전자날인 가능)

$$\text{학생인건비지급률} = \frac{\text{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text{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연구참여확약서는 고시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구분	확약 기간 (예시)	유의사항
학기(6개월)	당해연도 3월~8월, 9월~차년도 2월	학기 또는 학년 중에 학생연구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과월분 등록하지 않고 학기 또는 학년 말을 종료 시점으로 하여 시작 및 종료 시점 준수 (예: 5월 신규 등록 시 5월~8월로 작성)
학년(12개월)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 기관단위통합관리시 책임자계정용 연구참여확약서(고시 별지 제1호)와 기관계정용 연구참여확약서(고시 별지 제1호의2)를 별도 사용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 대학의 학기 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함
※ 근로계약서 연구참여확약서 대신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 연구참여확약서의 학생연구자 담당 업무(역할)는 연구수행 내용,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할 수 없음
- 연구참여확약은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변경 및 취소 가능. 계정책임자 및 기관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연구참여확약 변경 또는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장은 연구참여확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함

〈연구참여확약 변경 가능 사유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

각 호	내 용	비 고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의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연구참여확약서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참여종료일은 학적변동일로 같음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	

- 외국인 등 한국어 사용이 힘든 학생연구자와의 연구참여확약 시 영문 확약서 사용 권장 (매뉴얼 본권 제3장 제4절 참고 가능)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 공통사항은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및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을 다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표 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체계

연구 개발 기관 단위	책임자계정 지급액						
	기관계정 지급액						
	학생연구자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학기별 혹은 학년별 기관계정 지급액을 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지급 가능						
연구 책임자 단위	책임자계정 지급액						
	학생연구자	조연구 학생연구자		최정보 학생연구자		정관리 학생연구자	
	☞ 학생연구자별 책임자계정 지급만 가능						

〈표 3-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개념도

통합 관리	연구 개발 기관 계정 (기관 전체 계정/ 기관 세부 계정)	예) 산학협력단 또는 OO학과	연구책임자 A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책임자 B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	↓	↓	↓
			계정대체 또는 이체			
			산학협력단의 기관전체계정 또는 OO학과의 기관세부계정			
			↓	↓	↓	
	연구 책임자 계정	예) 연구책임자 A	기관계정 학생인건비 월별 지급 혹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선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기관계정책임자(예: 산학협력단장 또는 OO학과 학과장)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 확약 후 기관장이 기관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이체			
			연구책임자 A의 책임자계정			
			↓	↓	↓	
			책임자계정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책임자계정책임자(예: 연구책임자 A)가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 책정하여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한 후 기관장이 책임자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 주요 내용

- 학기 또는 학년 초에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계정책임자별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계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받의 불가)
- 통합관리계정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각 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대체처리 불가
- 학생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1개로 등록 관리(계정별 다른 계좌 등록 불가)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 불가
-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질 및 양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함. 다만 학생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기관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의 총합(통합관리계정의 기관계정 지급 금액 및 책임자계정 금액 포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

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포함)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기준금액	월 130만 원	월 220만 원	월 300만 원

-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7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대학·과기원·출연연)은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즉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적·인사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재학생, 수료생(연구 등록), 휴학생(근로계약))에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월에 해당 학생인건비를 지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정보와 지급 내역을 학생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기술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 필수, 신규·후속 과제 준비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과제 신청 혹은 협약 시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확약 지연으로 인해 소급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② 균등지급

※ 균등지급은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관단위통합관리 시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금액을 다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제40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학생연구자 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균등지급은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에서 기관계정별로 학위과정별 균등한 금액을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
- 균등지급 금액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나 학과회의(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관계정 책임자가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기관계정별로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에서 고시 제40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표 3-3〉 균등지급 책정 예시

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포함)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월 130만 원	월 220만 원	월 300만 원
2025년 1학기	A학과계정 균등지급금액	-	월 44만 원	월 60만 원
	B학과계정 균등지급금액	월 50만 원	월 80만 원	월 110만 원

※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균등지급 금액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인 계정별 균등지급금액은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

※ 통합과정의 경우 통합관리기관의 학위과정 적용기준에 따름

예시1) 석박사통합과정 일체 박사과정 기준 적용

예시2) 석박사통합과정은 1~4학기는 석사과정, 5학기 이상은 박사과정 기준 적용

- 균등지급 대상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균등지급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직장인 학생연구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해당 사유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대외 규정·지침에 명시)한 학생연구자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대외 규정·지침에 명시하고 균등지급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장은 학생연구자에게 복수의 기관계정(전체·세부계정 등)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이때 연구참여확약서는 계정별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함
-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선지급 가능

- ※ 일괄 선지급하는 경우, 협약 체결 시 선지급 후 학생연구자가 휴학 또는 제적·자퇴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또는 신규·후속 과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일괄계산하여 반납 받을 수 있음을 연구참여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학생연구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휴학하였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면 학적 변경 시점 이후 학생인건비로 새로 지급 가능함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또는 학과회의(내부결재) 서류 등 균등지급 금액 확정 서류와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 서류를 관리하고 매년 균등지급 금액 및 균등지급 대상자 비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이 접속 가능한 채널에 공개하여야 함

③ 차등지급

※ 차등지급은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및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⑦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협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차등지급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계정책임자가 학생연구자별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 연구참여협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되어 균등지급 금액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도 차등지급 금액 추가 계상하여 지급 가능
- 차등지급 금액은 균등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지급 가능함

5. 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가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기한 내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계정은 제외한다.)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차년도 3월 31일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제91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 연도 학생인건비의 합) × 0.2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경우 제1항의 당해 연도를 휴직이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지 아니한 가장 최근 연도로 본다.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해당 금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체나 계정대체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절차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 산정을 위한 방법 및 기준, 자료 제출 목록 및 시기 등
2.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산정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통보하는 방법 및 시기
3.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기준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할 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반납하는 시기 및 방법

● 주요 내용

- 매년 12.31. 기준으로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계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정 잔액을 사용하기에 전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이란 연도 말 시점 잔액을 의미할 뿐이므로, 잔액을 별도 이월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 수입액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
- 기관장은 과기정통부장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책임자계정의 연도 말 잔액 일부*를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고,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로 반납 필요(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반납). 기관장은 이 과정의 공식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를 내부 지침 또는 결재문서 등으로 관리 필요

* 연도 말 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 연도에 해당 계정에서 지급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 0.2

※ (예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 당해 연도 휴직이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여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은 잔액 반납·계정대체 금액 산정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며, 이와 관련한 과기정통부 측 별도 안내 확인 필요

6. 학생인건비 이자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 7. (생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용
- 다만,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 가능
- 이자수익은 이자발생 처리일을 기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반영(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수입처리하여 수입총액에 합산 필요)
- 서면점검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시 발생이자에 대한 세부 증빙 제출 필요

7. 학생인건비 이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times (\text{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div \text{변경 직전일 기준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이었던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1.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2. 계정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체 또는 계정대체 후 잔액이 있는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이 아닌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1. 계정책임자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요 내용

- 수행 중인 과제의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타 기관으로 변경 또는 ② 연구책임자가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 타 연구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고시 제95조제1항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고시 제9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계정 또는 고시 제95조제5항에 따른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참여제한 또는 퇴직한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관에서 유의해야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관계정 또는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또는 중단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연구개발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고시 제95조제1항에 따라 이관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고시 제9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반납 (8. 학생인건비 반납 참고)
- (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관계정에서 계속 사용(기관계정에 이체·계정대체한 금액은 이관 안 함)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를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4항, 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4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기관계정 또는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시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 기관계정 대신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이관 예시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사례 1]

- 책임자계정 잔액이 과제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 소요액(제95조제1항제1호 계산식의 합)보다 많은 경우

과제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해당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연구개 발기관	연구 책임자	책임자계정 잔액
가	9천만원	'20.3.1~'21.2.28(12개월)	2개월	A→B	a	6천만원 (①)
나	6천만원	'20.5.1~'21.4.30(12개월)	4개월	A→B	a	
다	3천만원	'20.7.1~'21.6.30(12개월)	6개월	A	a→b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일 : '21.1.1.
- 고시 제9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천만원(②)은
책임자계정 잔액 6천만원(①)보다 적으므로 제95조제1항제1호 적용

$$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 + 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 = 5\text{천만원(②)}$$

☞ A기관(a책임자계정)→B기관 이관 금액 : 3천5백만원

$$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 = 3\text{천5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b책임자계정) 이관 금액 : 1천5백만원

$$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 = 1\text{천5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기관계정 또는 타 책임자계정) 이체 금액 : 1천만원

$$6\text{천만원} - (3\text{천5백만원} + 1\text{천5백만원}) = 1\text{천만원}$$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사례 2]

- 책임자계정 잔액이 과제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 소요액(제95조제1항제1호 계산식의 합)보다 적은 경우

과제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해당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연구개 발기관	연구 책임자	책임자계정 잔액
가	9천만원	'20.3.1~'21.2.28(12개월)	2개월	A→B	a	3천만원 (③)
나	6천만원	'20.5.1~'21.4.30(12개월)	4개월	A→B	a	
다	3천만원	'20.7.1~'21.6.30(12개월)	6개월	A	a→b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변경일 : '21.1.1.
- 고시 제9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5천만원(②)은
책임자계정 잔액 3천만원(③)보다 크므로 제95조제1항제2호 적용

$$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 + 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 = 5\text{천만원(②)}$$

☞ A기관(a책임자계정)→B기관 이관 금액 : 2천1백만원

$$3\text{천만원} \times \frac{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 + 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 = 2\text{천1백만원}$$

☞ A기관(a책임자계정)→A기관(b책임자계정) 이관 금액 : 9백만원

$$3\text{천만원} \times \frac{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9\text{천만원} \times \frac{2\text{개월}}{12\text{개월}} + 6\text{천만원} \times \frac{4\text{개월}}{12\text{개월}} + 3\text{천만원} \times \frac{6\text{개월}}{12\text{개월}}} = 9\text{백만원}$$

8. 학생인건비 반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제95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모두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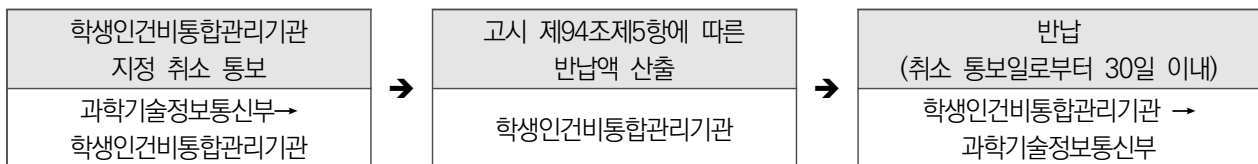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계정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3.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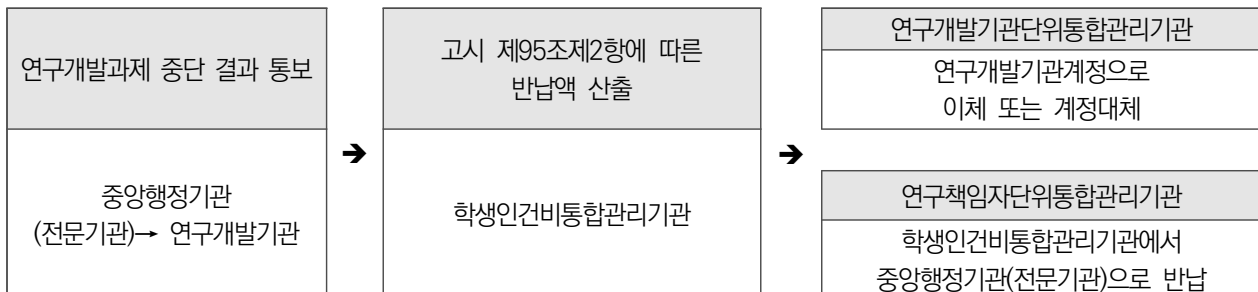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지정취소)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 필요. 반납액 산출 시 고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기준 일할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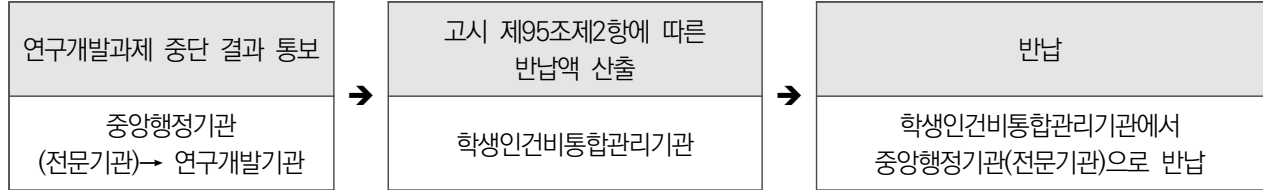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해약 및 중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친 경우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 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1.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유형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86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 시스템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과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
3.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 후 제2항 각 호를 평가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 가.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 나.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 설정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정의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고시 제2조제18호에서 말하는 기관으로, 동 고시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

* 고시 제86조제1항에 따라 대학 혹은 정부출연기관이 지정 신청 가능함

※ 2019년도 9월 이후 과기정통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기관은 모두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임. 단, 고시 제87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이전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인정함

● 신청 자격

- (신규 지정 신청 가능 기관)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

※ 대학 : 고시 제2조제7호의 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 정부출연기관 : 고시 제2조제6호의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기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암센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관리유형 변경 신청 가능 기관) 기존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 신청 요건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고시 [별표 2])을 충족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시 제88조제1항을 준수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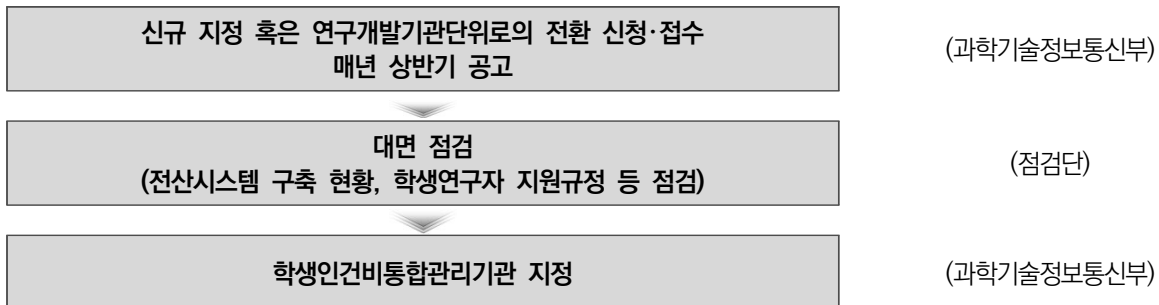
● 제출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완료 보고서

- 제88조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지정 절차



※ 기관 지정 현황은 본 매뉴얼 [참고 1]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알림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지정기관 후속조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전산시스템 상호 연계

- 고시 별표 3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관리

● 주의 사항

- 2019년도 9월 이후부터는 신규 지정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관리유형 변경은 연구책임자단위에서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전환 신청만 가능

2. 운영결과 점검(과기정통부→통합관리기관)

● 서면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0조(학생인건비의 사용) ④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경우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
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사항
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모든 통합관리기관 대상 실시
-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통합관리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변경 시 자체점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함
- (서면점검) 매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요청 시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후 과기정통부에 제출

제출서류(통합관리기관 → 과기정통부)

1. 별표 2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요건에 대한 자체점검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현황
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사항
4.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5.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7. 그 밖의 운영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대면점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3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 시 일부 기관을 선정하여 대면점검 실시
- 대면점검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점검 일시·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 예정(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외)

3. 지정취소 기준

-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통합관리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의 합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3. 별표 2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를 계산함에 있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의 우선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기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 (부당회수비율) 점검 실시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용도 외 사용 건으로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 (주의사항)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는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연구책임자계정 수를 기준으로 함
- (판단기준) 전문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제재처분 확정통보 정보 (통합관리기관에 자료 요구 및 내용 확인 요청 가능)

② 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text{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 \frac{\text{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지급총액}^{1)})}{\text{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좌 수입총액}^{2)})} \times 100 < 50\%$$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전전년도 잔액 포함)

- 위 산식의 수입총액과 지급총액은 모두 전용계좌 현금 입출금 기준임(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또는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월이 아닌 실제 지급·반납일자 기준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내역 및 지급비율을 관리하여야 함)
-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2회 이상'이라는 의미는 기관 통산 2회 이상을 의미함. 연속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③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고시 [별표 2] 혹은 본 매뉴얼 제2장 3. 운영현황 자체점검의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표 참고

④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예상치 못 한 협약 혹은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으로 인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부족,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지연 지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중 다른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상관없이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이 2% 초과되는 경우 혹은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⑥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 통합관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 점검 불이행, 점검자료의 조작, 관련 법 및 고시 조항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4. 지정취소 시 통합관리기관의 사후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5호)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액 산출 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할 수 있다.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div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⑦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반납

-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취소일 기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총액에 해당 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연구참여 확약된 학생인건비 지급 예정액만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한 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계정 잔액의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 고시 제94조제1항·제2항뿐만 아니라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지정 신청 가능

제 5 장

FAQ

5 FAQ

Q1. 2장 <학생인건비계상률&계상기준>

학생연구자가 여러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참여할 때, 각 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각각 계상·지급해야 하는지? 한 책임자계정에서만 지급해도 되는가?

- 각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 참여하는 경우 각 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확약하여야 함

Q2. 3장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가능한가?

- 학생인건비는 사전 확약하여야 하며, 확약한 금액을 확약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예상치 못한 잔액 부족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확약한 때에 지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지연 지급하는 것 외에는 소급지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계정책임자의 임의 요청에 따른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예상치 못 한 협약 혹은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만으로는 소급 확약 또는 소급 지급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는 학생인건비부당 회수로 제재처분 대상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함

Q3. 3장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미지급 상태로 연구 참여 가능한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달하는 경우 추가 연구 참여시 미지급으로 참여 가능함

Q4. 3장 <학생인건비 지급>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연구자가 기관계정에서만 지급받아도 되는가?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시 책임자계정 지급분은 확약하지 않고 기관계정 지급분만 확약하여 지급할 수 있음

Q5. 3장 <학생인건비 수입처리>

연구개발과제계정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정산을 위해 계좌이체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 분할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학생인건비를 이체 완료하여야 함

Q6. 3장 <학생인건비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지급대상자 설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하며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관 특성이나 기관계정 잔액 등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음

Q7. 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 하기 위한 금액 산출 시 책임자계정의 차년도 확약분은 제외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말 계정 잔액 기준으로 이체·대체분을 산정하며, 책임자계정에서 이미 차년도에 지급하도록 확약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 말 기준 잔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Q8. 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별 잔액의 일부를 이체·대체할 때, 기관 전체계정이 없는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 세부계정에 이체·대체해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관 전체계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 세부계정에 이체·대체할 수 있음

Q9. 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는데 언제부터 학생인건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협약한 과제에 대해 기존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 금액을 제외하고 학생인건비(일반)을 학생인건비(특례)로 협약 변경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함
- 연구참여확약은 기존 확약 건은 변경하지 않고 지정일 이후 새로 시작되는 정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통합관리계정에서 확약할 수 있음

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026년 3월 기준)

- 총 72개 기관(대학 64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65호 기준이며, 2026년 4월 이후 지정 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참고 가능

구분	기관명					
	연구책임자단위 (13개)			연구개발기관단위 (59개)		
대학 (64개)	대학 (13개)			대학 (51개)		
	계명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송실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한남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세종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출연(연) (4개)	출연연 (0개)			출연연 (4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특정(연) (4개)	특정연 (0개)			특정연 (4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구분별 기관명 가나다순 정렬

* 2026년 3월 1일 시행 기관

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26.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지급 대상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
지급 대상 적용 예외 예시	•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 직장인 학생연구자 •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 * 학과(또는 학부 등) 단위로 운영 시, 학과(또는 학부 등)의 장 가능 **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관계정 설정 방식	기관전체계정 또는 기관세부계정만 설정하거나, 기관전체계정 및 기관세부계정 병행 설정 가능 -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연구책임자계정이 있는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시 기관세부계정 설정 가능 - 기관세부계정 설정 이후에는, 설정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책임자 전원 기관계정으로의 수입액 이체·계정대체 의무
예산 확보	연별 또는 학기별 기관계정 예산 지급총액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 또는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계정·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
규정적 근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기관계정 지급 금액, 대상자 책정 방식 및 책정 결과 명시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도 가능)
금액 책정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하고,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4항각호 예) 석사과정생 기관계정 지급금액: 44만 원 (220만 원 × 20%) 박사과정생 기관계정 지급금액: 60만 원 (300만 원 × 20%)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에 정한 정보 공개 대상 일체는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 접속 가능한 채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기관계정 지급금액 기준 및 기관계정 수혜 인원의 비율(대상 인원 대비 수혜 인원) 등을 대내외 공개
발생이자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 원칙 •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 통합관리계정으로 바로 수입처리 가능 *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2]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환경 설정	학생인건비 총액 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연구참여확약 대상 관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을 위한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시스템 연동	개인정보 제3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현황	학생인건비 수입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이관·반납·이자 금액 관리
	연구참여확약 절차 관리	적절한 연구참여확약 절차 구현
	학생연구자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연구자 1인1계좌 등록 관리 및 지급(예정)정보 등 확인 기능 제공,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 전산시스템 점검 주요 항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1) 연도별 학생인건비 수입·지출· 잔액 현황 및 지급비율 조회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구현	가	부
	1. 연도별 또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지급비율 조회 가능 여부	☐	☐
	2. 기관 전체의 계정 수(책임자계정/기관계정),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조회 화면 구현 여부	☐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별(연구책임자계정, 연구개발기관계정)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집계화면 구현 여부	☐	☐
	4. 수입총액에 전년도 잔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 대상연도 이자수익 포함 여부	☐	☐
	기관 전체·통합관리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확인	가	부
	5. 연구책임자계정 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일치 여부	☐	☐
	6. 연구개발기관계정 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일치 여부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서면점검) 제출자료와 전산시스템 조회 화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수치 일치 여부	☐	☐
(2) 통합관리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통합이지바로 전송화면 구축 여부	가	부
	1. 전산시스템에서 통합이지바로로 전송할 각 항목별 내역 및 전송결과 조회 가능 여부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기한 내 통합이지바로로의 직전년도 항목별 내역 전송 여부	☐	☐
	통합이지바로 전송정보 일치 여부	가	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관리	3.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에 집계된 데이터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 절차 확인	가	부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등록된 모든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 절차 실시 여부	☐	☐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역 관리	가	부
(4)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에 동의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 명단 관리 여부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가	부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 여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과제 범위 확인) ※ 법 제1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과제 및 법 제13조를 적용받은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은 과제 목록 확인 포함	☐	☐
	2. 연구책임자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1인 1개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 가능) 구축 여부	☐	☐
	연구책임자계정으로의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	가	부
	3.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기한(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내 학생인건비 수입액의 이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 여부	☐	☐
	4. 학생인건비 수입액 이체 시 이체(입금)일자,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예산 총액 정보 식별 가능 여부	☐	☐
	5.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현 여부	☐	☐

	6.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 예산액, 잔액 증감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5) 연구개발 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가	부
	1.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구축 여부	☐	☐
	2. 연구개발기관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구축 여부	☐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의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	가	부
	3.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계정대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축 여부	☐	☐
	4.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 증가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감소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5.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시, 수입정보(이체 또는 대체일자, 연구책임자계정명, 금액 정보 등) 식별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가	부
	6.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한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운영 여부	☐	☐
	7. 연구책임자계정과 연구개발기관계정 병행 설정 여부	☐	☐
	8. (기관 전체 계정 설정 기관) 기관 전체 계정 1개 운영 여부 (기관 세부 계정 설정 기관) 세부 구분 내 복수의 기관계정 설정 통제 여부	☐	☐
	9. 연구개발기관계정별 균등지급대상자 명단 관리 여부	☐	☐
(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및 균등지급액 설정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시스템 관리	가	부
	1. 해당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서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전산시스템에서 학위과정별 설정 및 제어 여부	☐	☐
	2. 시행일자별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등록·관리하고 계상기준 변경 시 이미 확약 완료된 건의 학생인건비지급률 변경(갱신) 처리 가능 여부	☐	☐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 설정 관리	가	부
(7)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제안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 자동 설정 여부	☐	☐
	연구참여확약	가	부
	1.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등록 여부	☐	☐
	2. 학생연구자 담당 업무(연구수행 내용, 역할 등) 필수 기입 여부	☐	☐
	3. 연구참여확약 변경 사유 통제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총인건비계상을 관리	가	부
	4.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신분별로 자동 반영 여부	☐	☐
(8) 학적·인사 정보 연동 제어	5. 월별 학생인건비 등록(신규 및 변경) 시 총인건비계상을 100% 초과 방지 여부	☐	☐
	6.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은 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을 계산 시 제외 관리 여부	☐	☐
	연구참여확약 가능한 학생연구자 조회 및 등록	가	부
(8) 학적·인사 정보 연동 제어	1. 연구참여확약 대상 학생연구자 정보 검색 시 학적·인사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부적격 대상자(졸업자, 제적자 등)는 조회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조회되더라도 등록·저장할 수 없도록 제어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근로계약이 된 학생연구자인지 확인 가능한 기능 포함	☐	☐

	2. 통합·연계과정생의 학기별 계상기준이 상이한 경우 학기 정보도 조회되어 계상기준 반영 여부	☐	☐
	3. 타교 재학생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학생연구자의 정확한 정보 등록 여부	☐	☐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시 학적·인사시스템 연동 제어	가	부
	4.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및 지급 시점에 학적·인사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건은 처리되지 않는 기능 구현 여부	☐	☐
(9) 계정책임자 연구참여확약 정보 확인	연구참여확약 정보 확인	가	부
	1. 계정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 정보 및 지급내역 확인 가능 여부	☐	☐
	학생연구자 계좌번호 열람 제한	가	부
	2. 계정책임자 화면에서 학생연구자 계좌번호 열람 제한 여부	☐	☐
(10)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 등록	학생연구자가 직접 1인 1개 계좌 등록·관리	가	부
	1. 학생연구자 본인이 로그인하여 1인 1개 계좌 등록 가능 여부 (해당 전산시스템에 계정책임자 접속 불가 및 본인 인증 절차 확인)	☐	☐
	기관담당자가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 목록 등록·관리	가	부
	2. 계좌 유효성 검증(금융 정보 연계) 또는 계좌 사본 등록 후 행정담당자가 학생연구자의 계좌 여부 검증 및 승인 여부	☐	☐
(1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가	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동의 전 연구참여확약서 내용 전체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2. 학생연구자 동의 시 연구참여확약서상 학생연구자 본인 서명 기능 구현 여부	☐	☐
(12) 학생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연구참여확약서에 기반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가	부
	1. 학생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구참여확약정보에 근거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조회 가능 여부	☐	☐
	2. 학생연구자 본인이 연구참여확약한 계정 정보 및 계정별 지급(예정)월, (세전/세후)지급(예정)액, 계좌정보, 지급일자 확인 가능 여부	☐	☐
	3. 지급기준월 기준 매월 합산(월별 소계) 정보 제공 여부	☐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관련 정보 제공	가	부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등 기관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정보 안내 여부	☐	☐
(13) 연구참여 확약 체결 및 관리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관리	가	부
	1.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확약 내용(학생인건비 지급금액 및 담당 업무)이 적정인지 확인하는 등 기관장 승인 업무 처리 여부	☐	☐
	2. 기관 전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현황(계정책임자 제안, 학생연구자 동의, 기관장 승인) 조회 가능 여부 - 기한 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관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확약 체결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여부	☐	☐
	3. 학생연구자, (책임자계정/기관계정)계정책임자, 기관장 등 확약 주체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연구참여확약서의 전산시스템 보관, 열람 및 출력 기능 구축 여부 - 확약 주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도록 제어 관리 여부	☐	☐
	4.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현행화 여부	☐	☐

	연구참여확약 변경 관리	가	부
	5.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변경 이력 확인 가능 여부	☐	☐
	6. 연구참여확약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변경 가능 사유 확인 절차 준수 및 관련 증빙 구비 여부	☐	☐
(14)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확인 및 지급 발의	가	부
	1. 지급기준월별 통합관리계정별 지급 발의 여부(과제별 지급발의 시 불인정)	☐	☐
	2. 지급 대상자의 학적·인사 정보와 실시간 연동하고 계정별 잔액 범위를 계산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 요건에 맞지 않은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기능 구현 여부 - 위 사유로 지급 발의가 제외된 경우, 연구참여확약 변경 절차 처리 필요	☐	☐
	3.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지정일에 학생연구자의 개인 계좌로 학생인건비 이체 여부	☐	☐
	학생인건비 지급 결과 확인	가	부
	4. 지급기준월별 통합관리계정별 확약된 학생인건비가 누락 없이 지급되었는지 지급 결과 상시 조회 기능 여부(지급기간별, 학생연구자별, 계정별 정보 확인)	☐	☐
	5. 학생인건비 지급 지연 사유 및 증빙자료 관리 여부	☐	☐
	6. 학생인건비 지급 후 반납액 발생 시 처리 기능 및 증빙자료 관리 여부	☐	☐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관리	가	부
(15) 학생인건비 발생 이자 관리	7. 통합관리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및 지급 결과 조회 기능 여부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이자 관리	가	부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이자 발생 내역 등록·관리 여부	☐	☐
(16) 학생인건비 이관 절차 구현	2. 이자에 대한 기관 운영 지침(이자 배분 기준 등) 마련 및 준수 여부	☐	☐
	학생인건비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여부 (이관 및 반납 금액 산정 절차)	가	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및 이행 여부	☐	☐
	학생인건비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여부 (전산시스템)	가	부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간 이관 시 계정 간 예산액(수입액) 및 잔액 증감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17) 학생인건비부당 회수 방지 체계 마련	3.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타 계정(타 책임자계정, 기관계정,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이체/계정대체 일자, 계정대체 사유 관리 기능 구축 여부	☐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체계 마련	가	부
	1.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정보 현행화 여부	☐	☐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관련 부정행위신고 센터 운영 여부	☐	☐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여부	☐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 일치 여부	가	부
	4.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와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 일치 여부 ※ 고시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산정 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가 점검자료집 1번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 총괄표의 연구책임자계정 수와 일치 필요	☐	☐

기관담당자

1 연도별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지급비율 조회

● 목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연도별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현황을 조회하여 대상연도의 지급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구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체 및 통합관리계정별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및 지급비율 정보 제공 필요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지급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포함)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2 연구책임자계정 수		연구개발기관계정 수		1 조회 기능 대상 기간 YYYY-MM-DD ~ YYYY-MM-DD			
3	4 구분	전년도 계정잔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	대상연도 이자수익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잔액	대상연도 지급비율 (%)
	계정 합계						
5	A책임자계정						
	B책임자계정						
	...						
6	기관전체계정						
	기관세부계정						
	...						

운영현황 점검(서면점검) 제출자료

7	연구개발기관	...	전년도 계정잔액(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C)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D)	지급비율 (E=D/(A+B+C))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관리 화면에서 연도 또는 대상 기간으로 지급비율 조회 기능 구현
②	• 조회기간의 기관 전체의 통합관리계정 수(책임자계정/기관계정) 집계 화면 구현
③	• 조회기간의 연구개발기관 전체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조회 기능 구현
④	• 수입총액에 전년도 계정 잔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 대상연도 이자수익 반영
⑤	• 조회기간의 연구책임자계정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조회 화면 구현
⑥	• 조회기간의 연구개발기관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조회 화면 구현
⑦	• 기관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된 수치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수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서면점검) 제출자료 일치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구현	
☐	☐	1. 연도별 또는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지급비율 조회 가능 여부	
☐	☐	2. 기관 전체의 계정 수(책임자계정/기관계정),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조회 화면 구현 여부	
☐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별(연구책임자계정, 연구개발기관계정)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집계화면 구현 여부	
☐	☐	4. 수입총액에 전년도 잔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 대상연도 이자수익 포함 여부	
가	부	기관 전체·통합관리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확인	
☐	☐	5. 연구책임자계정 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일치 여부	
☐	☐	6. 연구개발기관계정 계정별 수입총액, 지급총액, 지급잔액, 지급비율 일치 여부	
☐	☐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운영현황 점검(서면점검) 제출자료와 전산시스템 조회 화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수치 일치 여부	

기관담당자

2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 목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현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으로 전송하기 위한 기능 제공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정보 확인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된 내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한 운영현황 점검(서면점검) 자료 일치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전산시스템 내 통합이지바로 연계전송 항목 구성



통합이지바로 항목별 전송내역 조회 화면

2

△△ 정보				
***	***	***	전송 완료	YYYY-MM-DD
***	***	***	전송 완료	YYYY-MM-DD
***	***	***	미전송	-
***	***	***	미전송	-
***	***	***	전송 실패	YYYY-MM-DD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에 집계된 데이터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 조회 화면

3

구분	전년도 계정잔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	대상연도 이자수익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잔액	대상연도 지급비율 (%)
계정 합계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전산시스템에서 통합이지바로로 전송할 각 항목별 조회 화면 구현
②	• 통합이지바로로 전송한 항목별 내역, 전송시점(일자 또는 일시), 전송결과 조회 화면 구현
③	•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에 집계된 데이터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상 데이터,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의 데이터 조회 화면 구현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통합이지바로 전송화면 구축 여부	
☐	☐	1. 전산시스템에서 통합이지바로로 전송할 각 항목별 내역 및 전송결과 조회 가능 여부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기한 내 통합이지바로로의 직전년도 항목별 내역 전송 여부	
가	부	통합이지바로 전송정보 일치 여부	
☐	☐	3.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에 집계된 데이터와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상의 데이터,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관리

● 목적

-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게 정보 제공
-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연계전송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동의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의 명단 관리 기능 구현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개인정보제3자제공활용동의 화면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화면)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 양식)

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교는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수집 항목 : 학번, 이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계좌번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 수집·이용 목적 :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 - 보유 및 이용기간 : 졸업일의 다음연도로부터 5년 경과할 때까지 동의 비동의	- 제공받는 자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공받는 이용 목적 :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점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분석 - 제공 항목 : 학번, 이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계좌번호,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졸업시까지) - 보유 및 이용기간 : 졸업일의 다음연도로부터 5년 경과할 때까지 동의 비동의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관련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제출

동의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의 명단관리시스템 조회 화면 (기관담당자 화면)

2

사번/학번	분류	성명	소속	동의일자
*****	계정책임자	최박사	OO학과	YYYY-MM-DD
*****	학생연구자	김학생	OO학과	YYYY-MM-DD
*****	학생연구자	이과학	△△대학교 대학원 OO학과	YYYY-MM-DD
...	...	...	...	...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등록된 모든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 절차 구현
②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에 동의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 명단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 절차 확인	
☐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등록된 모든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 절차 실시 여부	
가	부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역 관리	
☐	☐	2. 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동의 포함)에 동의한 학생연구자 및 계정책임자 명단 관리 여부	

기관담당자

4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 목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구분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하여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 구현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 기능

과제 기본정보	기관 관리 과제번호	1234-5678-90	과제명	○○○○ 과제	연구책임자	장영실
	연구개발과제번호 (전문기관 부여 번호)	2025-1111-11	사업명	○○○○ 사업	연계 유형	통합Ezbaro / 통합RCMS
	당해 연구개발기간	YYYY-MM-DD ~YYYY-MM-DD	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MM-DD ~YYYY-MM-DD	총 연구개발기간	YYYY-MM-DD ~YYYY-MM-DD
	당해 연구개발비	100,000,000	단계 연구개발비	200,000,000	총 연구개발비	400,000,000
	소관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발주기관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여부	대상 / 비대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 여부	대상	연구비 카드 적용 여부	대상

연구책임자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운영 중인 연구책임자계정	계정명	A연구책임자계정	연구책임자계정 신규 생성 시스템 화면	계정 유형	연구책임자계정
	사번	2025123456		사번	2025123456
	계정번호	48451555		계정번호	13579135
	학생인건비 잔액	10,000,000 원		알림 동일 계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확인	
		2			생성

학생인건비 이체 기한 내 이체 관리 기능

조회일자: 2025-05-31											
기관 관리 과제번호	과제명	연계유형	당해 연구시작일	당해 연구종료일	연구개발비 입금일자	학생인건비 이체일자	계정명	90일 이내 이체 여부	학생인건비 예산액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학생인건비 예산잔액
2025-123-90	○○ 과제	통합Ezbaro	YYYY-MM-DD	YYYY-MM-DD	2025-03-01	2025-03-30	기관전체계정	Y	30,000,000 원	30,000,000 원	0 원
2025-456-91	○○ 과제	통합Ezbaro	YYYY-MM-DD	YYYY-MM-DD	2025-01-01	2025-05-01	기관세부계정	N	20,000,000 원	20,000,000 원	0 원
2025-789-92	○○ 과제	통합RCMS	YYYY-MM-DD	YYYY-MM-DD	2025-02-15	2025-02-20	A책임자계정	Y	15,000,000 원	10,000,000 원	5,000,000 원
2025-147-93	○○ 과제	통합Ezbaro	YYYY-MM-DD	YYYY-MM-DD	2025-02-01	2025-03-30	A책임자계정	Y	15,000,000 원	15,000,000 원	0 원
...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정보(이체(입금)일자,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예산 총액 등) 관리 기능

계정번호	계정명	수입액	이자수익	지급액	잔액
A102030	A책임자계정	60,000,000 원	1,000,000 원	51,000,000 원	10,000,000 원

4

기관 관리 과제번호	과제명	당해 연구시작일	당해 연구종료일	연구책임자 계정번호	계정명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학생인건비 이체일자	전표번호
2025-123-90	OO 과제	YYYY-MM-DD	YYYY-MM-DD	A102030	A책임자계정	30,000,000 원	YYYY-MM-DD	2025-010-010
2025-456-91	OO 과제	YYYY-MM-DD	YYYY-MM-DD	A102030	A책임자계정	20,000,000 원	YYYY-MM-DD	2025-010-015
2025-789-92	OO 과제	YYYY-MM-DD	YYYY-MM-DD	A102030	A책임자계정	10,000,000 원	YYYY-MM-DD	2025-010-020
...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예시)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 연구개발과제 현황

예시) 연구책임자계정 →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현황

5

기관 관리 과제번호	***** ▼	과제명	OO 과제	연구책임자계정번호	***** ▼	기관 관리 과제번호	***** ▼
학생인건비 예산	10,000,000원	학생인건비 사용액	4,000,000 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30,000,000원	기확약 금액	14,000,000원
학생인건비 잔액	6,000,000원	이체할 금액	6,000,000 원	연구책임자계정 변경가능액	16,000,000원	변경 신청액	-5,000,000원
- 사용액: 학생인건비 예산 중 계정으로 수입처리된 학생인건비 금액				변경 후 예상 잔액			
				11,000,000원			
				- 변경 가능액: 계정 잔액 중 연구참여 확약된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예산액 및 잔액 증감 기능

6

기관 관리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계정번호	연구책임자계정명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학생인건비 이체일자	전표번호
2025-123-90	OO 과제	A102030	A연구책임자계정	-5,000,000 원	YYYY-MM-DD	2025-010-010

OO 과제 예산대비표 (예산 변경 전)

OO 과제 예산대비표 (예산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 현황

구분	계정명	소속 학과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 (C)	수입총액 (A+B+C)	기관계정 이체금액 (D)	지급총액 (E)	잔액 (A+B+C-D-E)
변경 전	A책임자계정	OO 학과	20,000,000원	30,000,000원	100,000원	50,100,000원	20,000,000원	20,000,000 원	10,100,000 원
변경 후	B책임자계정	OO 학과	20,000,000원	25,000,000원	100,000원	45,100,000원	20,000,000원	20,000,000 원	5,100,000 원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 기능 구현 (연구개발과제 정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여부를 보여주는 항목[체크박스 등]을 설정하여 학생인건비통합관리대상 과제 자동 목록화 필요)
②	• 연구책임자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구현 (1인 1개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 가능)
③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수입처리 시 학생인건비 예산액을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체하도록 전산시스템 제어 기능 구현
④	•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예산액 이체 시, 이체(입금)일자와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예산총액 등 관리 화면 구현
⑤	•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축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예산 범위 내 연구책임자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가능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범위(지급예정인 협약금액도 잔액에서 제외) 내 연구개발과제로 학생인건비 이체 가능
⑥	•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예산액, 잔액 증감 확인 화면 구현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설정 여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대상 과제 범위 확인) ※ 법 제1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과제 및 법 제13조를 적용받은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은 과제 목록 확인 포함	
☐	☐	2. 연구책임자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1인 1개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 가능) 구축 여부	
가	부	연구책임자계정으로의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	
☐	☐	3. 연구책임자계정으로 기한(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내 학생인건비 수입액의 이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 여부	
☐	☐	4. 학생인건비 수입액 이체 시 이체(입금)일자, 과제명,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예산 총액 정보 식별 가능 여부	
☐	☐	5.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현 여부	
☐	☐	6.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간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책임자계정 예산액, 잔액 증감 확인 기능 구현 여부	

5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 목적
 -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설정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을 위한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이체 또는 계정대체 내역, 예산 및 잔액 증감 내역 포함) 구현 및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 변경 이력 등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이력 관리 기능

1

계정명	계정책임자	교번	계정책임자 성명	계정책임자 설정(변경)시점
기관세부계정	OO 학과장	*****	유과학	YYYY-MM-DD
기관세부계정	OO 학과장	*****	홍기술	YYYY-MM-DD
기관세부계정	OO 학과장	*****	서기획	YYYY-MM-DD

연구개발기관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운영 중인 연구개발기관계정

계정명	세부기관계정
조직코드	B123456
계정번호	22222222
학생인건비 잔액	10,000,000 원

연구개발기관계정 신규 생성 시스템 화면

계정 유형	연구개발기관계정
조직코드	B123456
계정번호	13579135

2

알림

동일 계정이 이미 존재합니다.

확인

생성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예시)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 연구개발과제 현황

기관 관리 과제번호 ***** ▼

과제명 OO 과제

학생인건비 예산 10,000,000원

학생인건비 사용액 4,000,000 원

학생인건비 잔액 6,000,000원

이체할 금액 6,000,000 원

예시) 연구책임자계정 → 연구개발과제 | 연구책임자계정 현황

연구책임자계정번호 ***** ▼

기관 관리 과제번호 *****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30,000,000원

기확약 금액 14,000,000원

연구책임자계정 변경가능액 16,000,000원

변경 신청액 -5,000,000원

변경 후 예상 잔액 11,000,000원

3

- 사용액: 학생인건비 예산 중 계정으로 수입처리된 학생인건비 금액

- 변경 가능액: 계정 잔액 중 연구참여 확약된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학생인건비 이체 시 ‘연구책임자계정 →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 → 연구개발기관계정’ 예산 및 잔액 증감액 확인 기능(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 증가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감소 확인)

4

연구책임자계정번호	연구책임자계정명	연구개발기관계정번호	연구개발기관계정명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또는 계정대체 금액)	학생인건비 이체일자	전표번호
A102030	A책임자계정	C102030	기관세부계정	15,000,000 원	YYYY-MM-DD	2025-010-111

| 연구책임자계정 현황

구분	계정명	소속 학과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 (C)	수입총액 (A+B+C)	기관계정 이체금액 (D)	지급총액 (E)	잔액 (A+B+C-D-E)
변경 전	A책임자계정	○○ 학과	25,000,000원	30,000,000원	500,000원	55,500,000원	-	15,500,000원	40,000,000 원
변경 후	B책임자계정	○○ 학과	25,000,000원	30,000,000원	500,000원	55,500,000원	15,000,000원	15,500,000원	25,000,000 원

| 연구개발기관계정 현황

구분	계정명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 (C)	수입총액 (A+B+C)	지급액 (D)	잔액 (A+B+C-D)
변경 전	기관세부계정	10,000,000원	40,000,000원	500,000원	50,500,000원	45,500,000 원	5,000,000원
변경 후	기관세부계정	10,000,000원	55,000,000원	500,000원	65,500,000원	45,500,000 원	20,000,000원

연구개발기관계정 수입정보(이체(입금)일자, 연구책임자계정명, 금액 정보 등) 관리 기능

5

연구개발기관계정번호	연구개발기관계정명	수입액	이자수익	지급액	잔액
C102030	기관세부계정	500,000,000 원	5,000,000 원	300,000,000 원	205,000,000 원

|

구분	계정번호 / 과제번호	계정명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계정번호	연구개발기관계정명	학생인건비 이체금액	학생인건비 이체일자	전표번호
연구책임자계정	A102030	A책임자계정	C102030	기관세부계정	10,000,000 원	YYYY-MM-DD	2025-010-010
연구책임자계정	A102030	A책임자계정	C102030	기관세부계정	20,000,000 원	YYYY-MM-DD	2025-010-015
연구개발과제계정	2025-789-92	○○ 과제	C102030	기관세부계정	10,000,000 원	YYYY-MM-DD	2025-010-016
.....							
합계					500,000,000 원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이력 관리 기능 ※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명을 직책(산학협력단장 등)으로 표기하여, 직책 변경으로 인한 계정책임자 변경 자동설정 권고
②	- 연구개발기관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 (기관 전체 계정 설정 기관) 단일 기관계정 운영, (기관 세부 계정 설정 기관) 세부 구분 내 복수의 기관계정 설정 통제 필요
③	-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축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참여확약을 통해 지급예정인 학생인건비도 이체 가능 금액에서 제외 필요
④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 증가 및 연구책임자계정(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잔액 감소 확인 화면 구현 (기관계정에서 책임자계정으로의 이체 또는 계정대체는 불가)
⑤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수입정보(이체 또는 대체일자, 연구책임자계정명, 금액 정보 등) 관리 화면 구현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	1. 연구개발기관계정책임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구축 여부	
☐	☐	2. 연구개발기관계정 중복 생성 방지 기능 구축 여부	
가	부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의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절차	
☐	☐	3.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계정대체 가능 금액 제어 기능 구축 여부	
☐	☐	4.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 증가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감소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5.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시, 수입정보(이체 또는 대체일자, 연구책임자계정명, 금액 정보 등) 식별 가능 여부	
가	부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	☐	6.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기한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운영 여부	
☐	☐	7. 연구책임자계정과 연구개발기관계정 병행 설정 여부	
☐	☐	8. (기관 전체 계정 설정 기관) 기관 전체 계정 1개 운영 여부 (기관 세부 계정 설정 기관) 세부 구분 내 복수의 기관계정 설정 통제 여부	
☐	☐	9. 연구개발기관계정별 균등지급대상자 명단 관리 여부	

기관담당자

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및 균등지급액 설정

● 목적

-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서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학위과정별로 사전에 설정하여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해당 정보 공개
-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균등지급액 설정 시 해당 계정의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이 자동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기관 전체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조회

1 시행일자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기준	학석사 연계과정 -석사과정 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기준
2025-03-01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023-03-01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 YYYY-MM-DD에 등록된 계상기준으로 이미 확약된 건들의 학생인건비 지급률 일괄 변경 처리 반영

정신

등록 취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위과정 균등지급액 설정

대상 기간

4

대상년도

YYYY년

대상학기

X학기

조회

계정별 학위과정
균등지급액

5

6

계정명	기관계정별 균등지급액(원)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학석사연계과정 -학사과정 기준	학석사연계과정 -석사과정 기준	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 기준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학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기준	학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 기준
기관 전체계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관 세부계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등록 취소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 기준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록·관리
②	• 통합과정이 설치된 기관은 학칙,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에 적용기준이 명시되거나 적용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며, 학적시스템과 연동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준 설정 관리
③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미 확약된 건들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④	• 기관계정별로 학위과정별 균등금액을 학기별·학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조회 기능 구현
⑤	•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계정별 균등지급액을 연구참여확약 전 등록하여 균등지급 대상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⑥	• 기관계정별 학위과정의 균등지급액 등록·관리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시스템 관리	
☐	☐	1. 해당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서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전산시스템에서 학위과정별 설정 및 제어 여부	
☐	☐	2. 시행일자별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등록·관리하고 계상기준 변경 시 이미 확약 완료된 건의 학생인건비지급률 변경(갱신) 처리 가능 여부	
가	부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 설정 관리	
☐	☐	3.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 자동 설정 여부	

7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제안

● 목적

- 학생연구자가 연구 참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담당 업무, 지급기준월 등을 계획하고 변경 사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한 소급 지급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제안

1 대상 학생연구자	성명		학번		국가연구자번호	
	학위과정		학기	학기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생년월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원		

* 해당 계정에 연구참여 등록한 학생연구자를 선택한 뒤, 연구참여정보 및 월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등록

연구 참여 정보	2 참여시작일	2025-03-01	3 참여종료일	2025-08-31	4 월지급액	원
	담당 업무					

지급계획 생성

6 변경 제안 사유	변경 제안 사유	고시 제91조제3항 사유로만 선택하도록 관리				
	(필요시) 파일 첨부 또는 관련 문서 연결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대상 학생연구자의 기본 정보가 학사시스템 등과 연동되어 관리되어야 함 (최신 정보 유지 필수) -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의 학적상태 사전 확인 후 등록 절차 마련 - 졸업자 등 부적격 학생연구자의 등록 통제 기능 구현
②	- 학기/학년 단위로 지급 계획을 등록하고, 전월 등 이전 기간에 대한 지급 계획이 등록되지 않도록 제어 - 학생연구자가 학기/학년 중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시작일은 실제 참여 개시일로 입력 (소급 등록 불가능하므로 협약일이 참여시작일보다 늦을 수 없음)
③	참여종료일은 반드시 학기 말/학년 말까지 자동 설정하여 수시가 아닌 정기로 협약 체결
④	- 연구책임자계정 책임자가 등록하는 경우, 학위과정별 기준금액을 준수한 월 지급액 입력 -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가 등록하는 경우, 월 지급액은 사전에 등록된 학위과정별 균등지급액으로 자동 설정
⑤	타 계정(학생)인건비 지급 계획과 합산하여 해당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방지 기능 반영
⑥	- 기 등록된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협약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를 과기정통부 고시 제91조제3항 중에 선택하고, 연구참여협약서 서식도 그대로 사용(임의변경 금지) ※ 과기정통부고시 제91조 제3항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⑦	계정책임자 화면에서 학생연구자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 계정책임자가 작성한 협약서에 서명이 들어가도록 기능 구현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연구참여협약	
☐	☐	1.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등록 여부	
☐	☐	2. 학생연구자 담당 업무(연구수행 내용, 역할 등) 필수 기입 여부	
☐	☐	3. 연구참여협약 변경 사유 통제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가	부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	☐	4.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신분별로 자동 반영 여부	
☐	☐	5. 월별 학생인건비 등록(신규 및 변경) 시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방지 여부	
☐	☐	6.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은 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계산 시 제외 관리 여부	

8 학적·인사 정보 연동 제어

● 목적

- 각 계정에서 연구참여확약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수립 시 적격 학생연구자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학적·인사 정보의 변동사항이 연구참여확약 체결,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수립(편성), 학생인건비 지급 등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제어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시점부터 지급 시까지 학적·인사 정보 변동사항 실시간으로 반영 필요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대상 학생연구자 조회 및 등록																																																																												
검색		성명 학번 1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검색 결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소속</th> <th>단과대명</th> <th>학과명</th> <th>학위과정</th> <th>학적상태</th> <th>학기</th> <th>학번</th> <th>성명</th> <th>생년월일</th> <th>근로계약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학부</td> <td></td> <td></td> <td></td> <td>재학</td> <td></td> <td></td> <td></td> <td></td> <td>N</td> </tr> <tr> <td>2</td> <td>대학원</td> <td></td> <td></td> <td></td> <td>휴학</td> <td></td> <td></td> <td></td> <td></td> <td>Y</td> </tr> <tr> <td>3</td> <td>대학원</td> <td></td> <td></td> <td></td> <td>수료등록</td> <td></td> <td></td> <td></td> <td></td> <td>N</td> </tr> <tr> <td>4</td> <td>타 기관</td> <td></td> <td></td> <td></td> <td>재학</td> <td></td> <td>2</td> <td></td> <td></td> <td>N</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소속	단과대명	학과명	학위과정	학적상태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여부	1	학부				재학					N	2	대학원				휴학					Y	3	대학원				수료등록					N	4	타 기관				재학		2			N	...										
연번	소속	단과대명	학과명	학위과정	학적상태	학기	학번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여부																																																																		
1	학부				재학					N																																																																		
2	대학원				휴학					Y																																																																		
3	대학원				수료등록					N																																																																		
4	타 기관				재학		2			N																																																																		
...																																																																												
		등록 취소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시, 학적·인사시스템 연동 제어

◆ 학생연구자 검색

5

지급기준년도

YYYY년

지급기준월

MM월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건 생성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내역

체크	연번	계정명	학생연구자 정보			학위과정		학적상태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발의 가능 여부	발의 일자
			성명	학번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시점	현 시점	학위시점	현 시점					
☐	1	기관전체계정				석사	석사	재학	재학	500,000원	과학은행	12312312	Y	
☐	2	기관전체계정				박사	박사	재학	지위제직	600,000원	과학은행	147147	N	6
☐	3	기관세부계정				...	...	...	...					
☐	4	A책임자계정				석사	석사	재학	재학	400,000원	과학은행	12312312	Y	
☐	5	A책임자계정				박사	박사	휴학 (근로계약)	휴학 (-)	300,000원	과학은행	147147	N	7
☐	6	B책임자계정				...	...	...	...					
...	...													

지급발의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연구참여확약 대상자 조회 시,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가능한 학생연구자만 조회되도록 제어 - 학사·석사·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재학생, 근로계약한 휴학생, 수료후연구등록생, 타교 재학생만 조회되어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부적격 대상자(졸업자, 제적자 등)는 조회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조회되더라도 등록·저장할 수 없도록 제어
②	통합과정생이나 연계과정생의 경우, 학기별 계상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조회 시점에 학기 정보가 연동되어 조회되도록 제어
③	인사정보를 연동하여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이 된 학생연구자만 조회되어 등록할 수 있도록 제어
④	타교 재학생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학생연구자의 정확한 정보 등록 여부
⑤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를 조회하여 학적·인사 시스템 정보와 연동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⑥	연구참여확약 및 지급계획 등록 시점에 지급 가능한 학적상태였으나, 지급 발의 시점에 변동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발의가 되지 않도록 기능 구현
⑦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연구참여확약 가능한 학생연구자 조회 및 등록	
☐	☐	1. 연구참여확약 대상 학생연구자 정보 검색 시 학적·인사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여 부적격 대상자(졸업자, 제적자 등)는 조회되지 않도록 제어하거나, 조회되더라도 등록·저장할 수 없도록 제어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근로계약이 된 학생연구자인지 확인 가능한 기능 포함	
☐	☐	2. 통합·연계과정생의 학기별 계상기준이 상이한 경우 학기 정보도 조회되어 계상기준 반영 여부	
☐	☐	3. 타교 재학생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학생연구자의 정확한 정보 등록 여부	
가	부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시 학적·인사시스템 연동 제어	
☐	☐	4.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및 지급 시점에 학적·인사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을 통해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건은 처리되지 않는 기능 구현 여부	

10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 등록

- 목적
 - 학생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본인의 단일 계좌를 등록·관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연구자가 직접 1인 1개 계좌 등록·관리

1

학생연구자 정보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학과명)		학위과정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2

학생연구자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통장사본		파일 첨부	***학생연구자 통장사본.pdf		

※ 복수의 통합관리계정에 등록하더라도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1개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

기관담당자가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 목록 등록·관리

조회

연번	이름	학번	지급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통장사본	유효성 검증	승인 여부
1							Y	N
2							Y	N
3	유학생	202512345	OO은행	12314546412321	HAKSAENG YU	통장사본.pdf	N	Y
4								Y
5								Y
6								Y
7								Y
...								...

저장 취소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연구자 ID로 학생연구자가 직접 로그인하여 계좌를 등록하고 관리 • 학적시스템과 연동되어 현재 학생 학적상태가 확인되어야 함
②	• 학생연구자 본인이 계좌의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계좌 사본 등록 • 복수의 통합관리 계정에 등록하더라도 학생연구자 명의 1개의 계좌만 등록해야 함
③	• 기관담당자는 유효성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등록한 경우 계좌 확인 필요 ※ 타인이 계좌번호를 등록해도 해당 명의의 예금주 정보만 일치하면 유효성 검증은 통과될 수 있어 별도 승인 절차 마련 필수
④	• 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과 영문성명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관리자 승인 시 확인 필요 ※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생연구자 성명은 국문으로 표기되고, 예금주는 영문으로 표기되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연구자가 직접 1인 1개 계좌 등록·관리	
☐	☐	1. 학생연구자 본인이 로그인하여 1인 1개 계좌 등록 가능 여부 (해당 전산시스템에 계정책임자 접속 불가 및 본인 인증 절차 확인)	
가	부	기관담당자가 학생인건비 지급 계좌 목록 등록·관리	
☐	☐	2. 계좌 유효성 검증(금융 정보 연계) 또는 계좌 사본 등록 후 행정담당자가 학생연구자의 계좌 여부 검증 및 승인 여부	

1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정책임자가 작성한 연구참여 확약 내용 일체를 학생연구자가 계정책임자와 협의하거나 동의 후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학생연구자(본인) 정보

성명

학번

국가연구자번호

학위과정

학기

원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생년월일

학생인건비 상한금액

원

대상 기간

대상년도

YYYY

대상학기

1학기 / 2학기

조회

연구참여 확약 내용

계정명	연구참여 시작일	연구참여 종료일	담당업무	구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지급률	상태 (처리일)	연구참여 확약
기관전체계정	2025-03-02	2025-08-31		균등	원	%	책임자 제안 (2025-02-15)	동의 대기 (제안 내용 확인 필요)
A 책임자계정	2025-03-02	2025-08-31		차등	원	%		
B 책임자계정	2024-09-02	2025-02-28		차등	원	%	기관장 승인 (2024-08-30)	확약서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확약' 동의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참여 확약서' 내용(인적사항, 참여정보, 기타 확약사항)을 충실히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그대로 화면(팝업) 제공 • 학생연구자 동의 전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도록 구현 ※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 확인 후 동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어 필요
②	• 학생연구자의 동의가 완료된 연구참여확약서에는 학생연구자 서명이 들어가도록 기능 구현하고 상시 조회될 수 있도록 제공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	☐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동의 전 연구참여확약서 내용 전체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2. 학생연구자 동의 시 연구참여확약서상 학생연구자 본인 서명 기능 구현 여부	

12 학생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 목적

-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확약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지급대상월, 지급액) 및 지급 완료 정보(계좌정보·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연구참여확약서에 기반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학생연구자(본인) 정보	성명		학번		국가연구자번호	
	학위과정		학기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생년월일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월		

조회 대상 기간	1	시작일	YYYY-MM-DD	종료일	YYYY-MM-DD	조회일자: 2025-04-02
						검색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및 처리 결과	2	연번	지급 기준월	계정명	구분	지급률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후)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여부	지급일 (예정일)
	3	1	2025-03	기관전체계정	균등	20%	600,000원	547,200원	OO은행	12312312	Y	2025-03-25
	2	2	2025-03	A책임자계정	차등	10%	300,000원	273,600원	OO은행	12312312	Y	2025-03-25
	3	3	2025-03	B책임자계정	차등	20%	600,000원	547,200원	OO은행	12312312	Y	2025-03-25
	소계	2025-03				50%	1,500,000원	1,368,000원	OO은행	12312312		
	4	4	2025-04	기관전체계정	균등	20%	600,000원	547,200원	OO은행	12312312	Y	2025-03-25
	5	5	2025-04	A책임자계정	차등	10%	300,000원	273,600원	OO은행	12312312	N	2025-04-25
	6	6	2025-04	B책임자계정	차등	20%	600,000원	547,200원	OO은행	12312312	N	2025-04-25
	소계	2025-04				50%	1,500,000원	1,368,000원	OO은행	12312312		
	7						...					

6

※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연구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②	• 조회기간 동안 학생연구자 본인이 연구참여확약한 계정 정보, 지급(대상)월, 지급(예정)액, 계좌정보, 지급일자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
③	• 1개 이상의 계정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의 경우, 월별 기관계정 및 각 책임자계정의 지급(대상)액을 각각 구분하여 월별 계정 지급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④	• 연구참여확약서에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지급대상액과 세액이 공제된 실지급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⑤	• 지급기준월 기준 매월 합산 정보(월별 소계) 제공
⑥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및 부정행위신고 센터 운영 정보를 해당 화면에서 제공 권장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연구참여확약서에 기반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	☐	1. 학생연구자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구참여확약정보에 근거한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조회 가능 여부	
☐	☐	2. 학생연구자 본인이 연구참여확약한 계정 정보 및 계정별 지급(예정)월, (세전/세후)지급(예정)액, 계좌정보, 지급일자 확인 가능 여부	
☐	☐	3. 지급기준월 기준 매월 합산(월별 소계) 정보 제공 여부	
가	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관련 정보 제공	
☐	☐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등 기관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정보 안내 여부	

13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관리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에 따라 통합관리 기관장은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 기관장이 날인(전자날인 가능)하여 확약 체결한 정보 및 확약서 원본과 사본 관리가 필요
- 언제든지 연구참여확약서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행정 편의성 및 효율성 확보를 권장하며 연구참여확약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인건비가 지급되도록 관리 필요
- 부득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서면 작성한 경우 확약 체결 후 연구참여확약서를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에게 배부하고 기관에서 보관 및 전산시스템 업로드하여 관리 필요
- 확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상 제어 및 관리 필요
-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추가 작성하여야 하며, 고시에서 정한 변경 가능 사유 외에는 변경 불가하도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전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정보 조회·관리

조회												
1		대상연도	YYYY년	대상학기	X학기	연구참여확약 상태		계정책임자 제안 학생연구자 동의 기관장 승인				
선택	연번	계정 지수	계정명	성명	학번	국가연구자 번호	학위 과정	학기	확약 상태	담당업무	학생인건비 월 지급액	학생인건비 지급률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연구참여확약 정보												
발생사유												
확약상태												
처리일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 체결 처리												
☐	1	1	A책임자 계정	김혁신					재학			
☐	2	2	A책임자 계정	김혁신					휴학 (근로계약)			
☐	3	1	기관 전체계정	이연구					수료등록			
☐	...											

3 기관장 승인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연구참여확약서를 학생인건비 지급 단위(학기별(6개월) 또는 학년(12개월))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관담당자가 학생연구자와 계정책임자가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서 정보를 기관담당자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②	• 연구참여확약 변경 시, 연구참여확약서를 추가 작성하고 종전 확약서와 변경된 확약서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 •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생 사유를 확인하여 관련 증빙을 구비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시
③	• 기관담당자가 기관장 확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실시할 때 과기정통부 학위과정별 계상기준 금액의 10% 이상 지급 여부,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된 학위과정별 금액 지급 여부 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④	• 기관장이 승인하여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에만 기관장 직인이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고, 시스템에서 연구참여확약서를 상시 조회하고 출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필요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관리	
☐	☐	1.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참여확약 내용(학생인건비 지급금액 및 담당 업무)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등 기관장 승인 업무 처리 여부	
☐	☐	2. 기관 전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현황(계정책임자 제안, 학생연구자 동의, 기관장 승인) 조회 가능 여부 - 기한 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관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확약 체결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여부	
☐	☐	3. 학생연구자, (책임자계정/기관계정)계정책임자, 기관장 등 확약 주체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연구참여확약서의 전산시스템 보관, 열람 및 출력 기능 구축 여부 - 확약 주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도록 제어 관리 여부	
☐	☐	4. 연구참여확약서 양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현행화 여부	
가	부	연구참여확약 변경 관리	
☐	☐	5.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변경 이력 확인 가능 여부	
☐	☐	6. 연구참여확약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변경 가능 사유 확인 절차 준수 및 관련 증빙 구비 여부	

14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 목적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원칙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전 연구참여확약을 완료하고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절차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일자에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구현
-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한 기관계정 지급액 및 책임자계정 지급액이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절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확인 및 지급 발의

대상 기간

1

지급기준년도

YYYY년

지급기준월

MM월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건 생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내역

체크	연번	계정명	학생연구자 정보			학위과정		학약상태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은행명	계좌 번호	지급 발의 가능 여부	발의 일자
			성명	학번	국가 연구자 번호	학약 시점	현 시점	학약 시점	현 시점					
☐	1	기관전체계정	이평가			석사	석사	재학	재학	500,000원	과학 은행	12312312	Y	YYYY- MM-DD
☐	2	기관전체계정	이연구			박사	박사	재학	재학	600,000원	과학 은행	147147	N	
☐	3	기관전체계정	김기윤			...	...	...	...					
☐	4	A책임자계정	이평가			석사	석사	재학	재학	400,000원	과학 은행	12312312	Y	YYYY- MM-DD
☐	5	A책임자계정	김혁신			박사	박사	휴학 (근로계약)	휴학 (-)	300,000원	과학 은행	147147	N	
☐	6	B책임자계정	김기윤			...	...	...	...					
...	...													

3

지급발의

학생인건비 지급결과(누락, 미처리 대상 건 발생 여부) 확인

◆ 학생연구자 검색

지급기준 시작년월

2025-03

지급기준 종료년월

2025-04

검색

성명

학번(국가연구자번호)

()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4

* 참고: 국가연구자번호로도 검색가능하도록 구현 하던데, 학생연구자 정보를 지정하지 않고 조회 시 전체 검색되도록 구현 하던 데이터 관리 시 편리함

◆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5

연번	지급기준월	계정명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구분	계상기준 (원)	지급률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원) (세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원) (세후)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일 (예정일)	지급 여부	지연사유
			성명	학번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과정	학기	학적 상태									
2	2025-03	기관전체계정						기관 계정	3,000,000	20%	600,000	547,200	과학 은행	12312312	2025-03-25	Y	-
6	2025-03	A책임자계정						책임자 계정	3,000,000	70%	2,100,000	1,915,200	과학 은행	12312312	2025-03-31	Y	계정 내역 부족
소계	2025-03								3,000,000	90%	2,700,000	2,462,400	과학 은행	12312312			
4	2025-04	기관전체계정						기관 계정	3,000,000	20%	600,000	547,200	과학 은행	12312312	2025-04-25	N	-
6	2025-04	A책임자계정						책임자 계정	3,000,000	70%	2,100,000	1,915,200	과학 은행	12312312	2025-04-25	N	-
소계	2025-04								3,000,000	90%	2,700,000	2,462,400	과학 은행	12312312			
...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관리

◆ 계정별 학생인건비 예산 현황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의수익 (E)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F)	잔액	지급비율 (G=F/(A+B+E))

* 계정책임자가 실시간으로 계정책임자의 수입액, 지출액,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대상 기간

7

지급기준 시작년월

2025-03

지급기준 종료년월

2025-04

검색

◆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조회일자: 2025-05-07

연번	지급 기준월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지급률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후)	지급일 (예정일)	지급 여부	지연지급 사유	반납 대상 여부	반납 발생 사유	반납 처리일
		성명	학번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과정	학기									
1	2025-03						20%	600,000원	547,200원	2025-03-31	Y	계정 잔액 부족	-	-	-
소계	2025-03						20%	600,000원	547,200원						
2	2025-04						20%	600,000원	547,200원	2025-04-25	Y	8 2025-04-30 학원변동 (제직)	Y	2025-05-02	2025-05-02
소계	2025-04						20%	600,000원	547,200원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월별 기관 전체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건을 생성하는 기능 구현 • 연구참여확약 체결이 진행(미완료) 중인 건은 대상 건으로 생성되지 않도록 통제
②	• 지급 대상자의 학적·인사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고 계정별 잔액 범위를 계산하여 지급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처리
③	• 기관 전체의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월별 학생인건비 지급일에 누락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④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월에 해당 학생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구현 • 학생연구자별 지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국가연구자번호로도 검색 가능하도록 구현
⑤	• 학생인건비 지급 결과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 반영
⑥	• 불가피하게 학생인건비가 지급 지연된 경우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통합관리계정 잔액 부족
⑦	• 통합관리계정별로 학생인건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계정책임자의 수입액, 지급총액,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학약기간의 지급예정 정보와 지급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계정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계좌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함)
⑧	• 부득이 학생인건비 지급 후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확인 및 지급 발의	
☐	☐	1. 지급기준월별 통합관리계정별 지급 발의 여부(과제별 지급발의 시 불인정)	
☐	☐	2. 지급 대상자의 학적·인사 정보와 실시간 연동하고 계정별 잔액 범위를 계산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검증한 후, 요건에 맞지 않은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기능 구현 여부 - 위 사유로 지급 발의가 제외된 경우, 연구참여확약 변경 절차 처리 필요	
☐	☐	3.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지정일에 학생연구자의 개인 계좌로 학생인건비 이체 여부	
가	부	학생인건비 지급 결과 확인	
☐	☐	4. 지급기준월별 통합관리계정별 확인된 학생인건비가 누락 없이 지급되었는지 지급 결과 상시 조회 기능 여부(지급기간별, 학생연구자별, 계정별 정보 확인)	
☐	☐	5. 학생인건비 지급 지연 사유 및 증빙자료 관리 여부	
☐	☐	6. 학생인건비 지급 후 반납액 발생 시 처리 기능 및 증빙자료 관리 여부	
가	부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관리	
☐	☐	7. 통합관리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및 지급 결과 조회 기능 여부	

15 학생인건비 발생 이자 관리

- 목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용계좌에 입금된 일자로 누락없이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수입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인건비 이자 발생 내역 조회 화면

1	이자발생일	계정명	이자발생액	전표번호
	YYYY-MM-DD	기관전체계정	249,241,098원	2025-010-123
	YYYY-MM-DD	기관세부계정	148,980,245원	2025-010-456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 이자 발생 내역 관리 화면 구현(전용계좌 발생이자 내역과 일치 필요)
---	--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이자 관리	
☐	☐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이자 발생 내역 등록·관리 여부	
☐	☐	2. 이자에 대한 기관 운영 지침(이자 배분 기준 등) 마련 및 준수 여부	

16 학생인건비 이관 절차 구현

● 목적

-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 퇴직, 참여제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 잔액을 이관 및 반납하기 위한 절차 구현

※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관계정에서 계속 사용하여야 함(기관계정에서 책임자계정으로의 이체 또는 계정대체는 불가)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간 이관 시, 계정 간 예산액(수입액) 및 잔액 증감내역 확인 화면 구현

예시) 연구책임자계정 → 타 통합관리계정

연구책임자계정번호	***** ▼	타 통합관리계정번호	*****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30,000,000원	변경 신청액	-5,000,000원
연구책임자계정 변경가능액	15,000,000원	변경 후 예상 잔액	10,000,000원

구분	계정명	소속 학과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C)	수입총액 (A+B+C)	지급총액 (D)	잔액 (A+B+C-D)
변경 전	A책임자계정	□□학과	10,000,000원	20,000,000원	500,000원	30,500,000원	500,000원	30,000,000원
변경 후	A책임자계정	□□학과	10,000,000원	15,000,000원	500,000원	25,500,000원	500,000원	25,000,000원

구분	계정명	소속 학과	전년도 계정잔액 (A)	대상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B)	대상연도 이자수익(C)	수입총액 (A+B+C)	지급총액 (D)	잔액 (A+B+C-D)
변경 전	B책임자계정	□□학과	5,000,000원	10,000,000원	200,000원	15,200,000원	10,200,000원	5,000,000원
변경 후	B책임자계정	□□학과	5,000,000원	15,000,000원	200,000원	20,200,000원	10,200,000원	10,000,000원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사유 관리(증빙자료) 기능 구현

2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이관(안)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5조

2) 동일등 연구책임자가 이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가

○○○ 연구책임자 이직일자: YYYY-MM-DD

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100,000,000원

다

이관 대상 계정 및 금액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A연구책임자	100,000,000원

이관 대상 계정	이관 금액
타 기관 이관 과제	10,000,000원
□□학과 기관계정	60,000,000원
B연구책임자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붙임

파일

1. 연구책임자계정 잔액현황(예실대비표) 1부.

2. 이관금액 산출내역 1부, 끝.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간 이관 시, 계정 간 예산액(수입액) 및 잔액 증감 내역 확인 화면 구현
②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타 계정(타 책임자계정, 기관계정,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사유 및 증빙자료 첨부 기능 구축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인건비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여부 (이관 및 반납 금액 산정 절차)	
☐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및 이행 여부	
가	부	학생인건비 이관 및 반납 절차 구비 여부 (전산시스템)	
☐	☐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간 이관 시 계정 간 예산액(수입액) 및 잔액 증감 확인 기능 구현 여부	
☐	☐	3.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타 계정(타 책임자계정, 기관계정,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시, 이체/계정대체 일자, 계정대체 사유 관리 기능 구축 여부	

/ 89 /



17 학생인건비부담회수 방지 체계 마련

● 목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부당회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을 학생연구자에게 안내하고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운영현황 점검자료 중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일치* 및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노력 필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산정 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수가 본 점검자료집 1번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및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총괄표의 연구책임자계정수와 일치 필요
 - ** 학생인건비부당회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이므로, 미지급 행위도 포함됨에 유의

〈전산시스템 구축 예시〉

부정행위신고 센터 내 신고 화면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 동의 ☐ 비동의

재목	○○○에 대한 신고	
신고 내용	누가	○○기관 ○○팀 / 학과 / 센터 / ○○○ (교수, 직원, 연구원 등)
	언제	행위가 발생한 시점 또는 기간
	어디서	행위가 발생한 장소
	무엇을	대상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기재

파일첨부

파일선택

신고자 정보

E-mail

신고 접수하기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확인 화면 내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2

기관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및 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정보 제공

학생연구자(본인) 정보

성명		학번		국가연구자번호	
학위과정		학기		학적상태	재학/휴학/수료등록
생년월일		학생인건비 상한금액		월	

조회 대상 기간

시작일	YYYY-MM-DD	종료일	YYYY-MM-DD	
-----	------------	-----	------------	--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및 처리 결과

검색

연번	지급 기준월	계정명	구분	지급률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세후)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여부	지급일 (예정일)
1	2025-03	기관전체계정	균등	20%	600,000원	547,200원	○○은행	12312312	Y	2025-03-25
2	2025-03	A책임자계정	차등	10%	300,000원	273,600원	○○은행	12312312	Y	2025-03-25
3	2025-03	B책임자계정	차등	20%	600,000원	547,200원	○○은행	12312312	Y	2025-03-25
소계	2025-03			50%	1,500,000원	1,368,000원	○○은행	12312312		
4	2025-04	기관전체계정	균등	20%	600,000원	547,200원	○○은행	12312312	Y	2025-03-25
5	2025-04	A책임자계정	차등	10%	300,000원	273,600원	○○은행	12312312	N	2025-04-25
6	2025-04	B책임자계정	차등	20%	600,000원	547,200원	○○은행	12312312	N	2025-04-25
소계	2025-04			50%	1,500,000원	1,368,000원	○○은행	12312312		
...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

①	• 부정행위신고 센터 운영 여부
②	• 학생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화면(예: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확인 화면) 내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여부 - 신고 접수 후 구체적인 진행 절차, 신고자 정보 비공개 보호 방안 등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에 명시 필요 - 신고 절차는 비공개 형태(제보자 본인만 확인 가능)로 운영하되, 제보 내용은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감사팀장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진상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제보 내용은 비공개이더라도, 제보는 실명으로 해야 추후 진상조사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회신할 수 있음)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내용	비고
가	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체계 마련	
☐	☐	1.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정보 현행화 여부	
☐	☐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관련 부정행위신고 센터 운영 여부	
☐	☐	3.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방법 안내 여부	
가	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 일치 여부	
☐	☐	4. 운영현황(서면점검) 제출자료와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자료 일치 여부 ※ 고시 제94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산정 시, 전체 연구책임자계정 수가 점검자료집 1번 지급비율 조회(관리)시스템 및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 총괄표의 연구책임자계정 수와 일치 필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2026. 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